

등록번호

여성인권-기타-2021-06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개

(1) 운영 개요	06
(2) 주요 지원 내용	06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지원 체계	07

2. 디지털 성폭력이란

(1)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10
(2)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10

3.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 상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법률	14
(2) 피해 유형별 상담	17
(3) 상담 지원 절차 및 체계	37
(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연계 및 기타 지원	41

3.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 삭제 지원

(1) 삭제 지원	48
(2) 삭제 지원 대상 플랫폼	49
(3) 삭제 지원 절차 및 체계	54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소개

(1) 운영 개요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을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의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 및 피해 접수 상담과 여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연계 등의 사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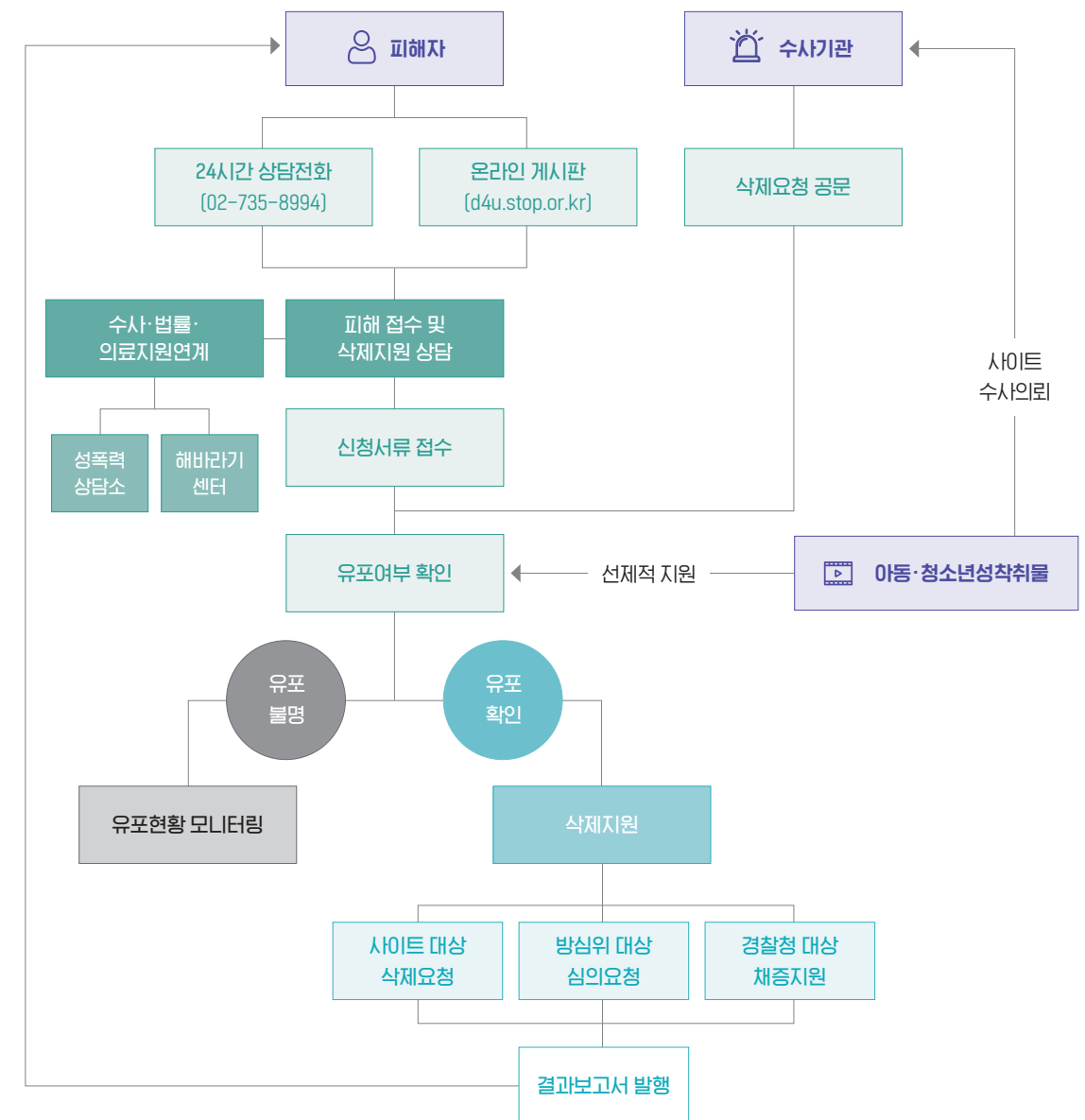
관련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2) 주요 지원 내용

피해접수 상담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초 상담
삭제 지원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 지원결과보고서 조회
수사 지원 연계	기초 채증 자료 작성지원, 신고 및 조사 연계, 지원(상담)사실확인서 작성 등
피해지원기관 연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지원 체계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2. 디지털 성폭력이란

(1)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복제·합성·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디지털 공간·미디어·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2)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

1) 피해가 발생한 공간과 기술적인 특성

[발생 공간적 특성]

-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함.
- 피해 발생 공간과 시기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움.
- 디지털화된 촬영물이 복제된 경우, 반복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기술적 특성]

- 디지털 촬영 기기, 유비쿼터스 접속 환경,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합성, 음성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 채팅, 위치 추적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기술과 관련¹⁾되어 있음.
-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합성, 유포,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²⁾함.

2) 사회 인식과 구조적 문제

- 한국에서 '국산 야동(야한 동영상)'은 피해 촬영물이 아닌 하나의 취향으로 소비되어 옴.
- 촬영은 동의하였으나 유포는 동의하지 않은 피해 촬영물의 경우, 피해의 '무결성'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1) 김수아, 장다혜 (2019).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89-130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9),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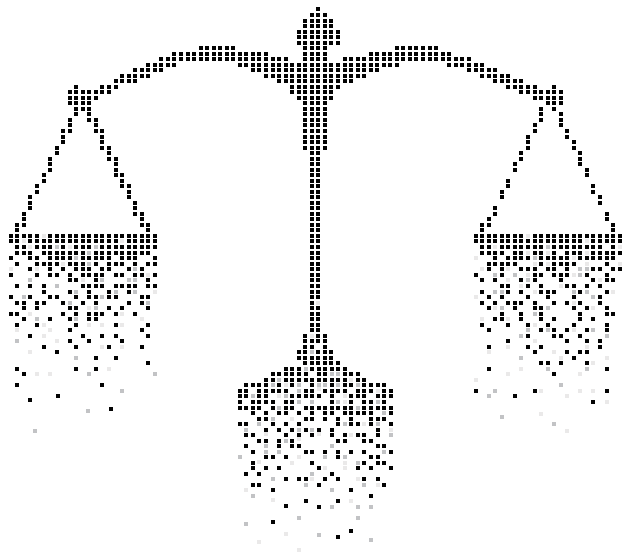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3.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 상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법률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성폭력 중에서 **현행 법률에 의거, 성범죄로 인정되는 일부 폭력을 의미함**.
- 현재 성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피해 촬영물 비동의 유포, 허위영상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음.
-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은 계속해서 다양해지나, 모든 디지털 성폭력을 성범죄로써 처벌할 법률에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음.



유형	적용법률	성격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설치형, 직접 촬영형(이동형) -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아동·청소년 성착취 촬영물 제작
	유포·재유포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 성적 촬영물 유포·재유포 - 본인 동의 촬영물 포함(최초 유포자)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동의 유포·재유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성폭력 처벌법 제14조3 제1항,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3호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유포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공포 유발 영상 등 반복 전송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영리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소지·구입·저장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허위 영상물 이용 성폭력	합성 제작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함
	유포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제3항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재유포
사이버 괴롭힘	사진 도용 및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SNS, 문자, 전자우편, 모바일 앱 등의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및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전송

(2) 피해 유형별 상담

1) 비동의 유포/재유포·제 3자 유포

2) 불법 촬영

3) 유포 협박

4) 유포 및 재유포 불안

5) 사진 합성 및 편집

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7) 온라인 그루밍

8) 몸캠피싱

1) 비동의 유포/재유포·제3자 유포

예시

- ① 스튜디오에 단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전신 노출 사진을 찍게 됨.
계약서 내용에는 외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몇 년 후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알게 됨.
- ② 전 남자친구와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이 나의 동의 없이 몇 년 전부터 유포되어 왔음.

- ! 촬영물이 편집되거나 시리즈/스토리 형태로 유포되기도 함
- !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인지한 시점이 다르고 타인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 많음
- ! 피해 촬영물들이 소비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불안 피해'가 점차 확산됨
- ! 유포하는 사람이 최초 유포자인지 제3자인지 구분이 어려움
- ! 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저장과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유포 가능성이 존재
- !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낮은 경우가 많고, 국내 사이트가 아닌 경우 신상 특정이 어려움

CHECK

확인 사항

- 피해 발생 시점
- 경찰신고 여부
- 촬영 동의 여부
- 원본, 키워드, URL 등 피해촬영물 삭제를 위한 자료 확보 여부

지원 사항

- 경찰신고 안내
- 수사·법률 지원 안내
- 채증 지원
- 삭제 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안내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TIP

-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누군가가 더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원자에게 피해를 밝히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충분한 지지 상담과 더불어 피해 경위 탐색 시 조심스러운 배려가 필요
- 촬영에 동의한 경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
-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저장과 복사가 쉬워 피해 규모가 빠르게 확산됨
- 모든 피해촬영물을 완벽히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재유포도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나 실제 판례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례 많음
- 해외 사이트는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법 조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설명해야 함
- 피해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일 때 수사기관에 채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바로 사건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피해지원기관의 조력을 받아 국선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2) 불법 촬영

예시

- ① 가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길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불법 촬영함.
- ② 공중화장실 선반에 물건이 있어 확인해보니, 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
- ③ 애인과 가끔 가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영상을 성인사이트에서 지인이 발견.
촬영된 줄 전혀 몰랐고, 영상의 목소리가 애인과 같아 영상 속 인물이 본인과 애인임을 확인함.

-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음.
- ❖ 피해자들의 신고 의지가 확고한 경우가 많음.
- ❖ 몰래 설치를 해서 촬영하는 설치형과 이동하며 피해자를 촬영하는 이동형이 있음.
- ❖ 증거(피해 촬영물)를 확인 및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다수.

CHECK

확인 사항	지원 사항
- 피해 발생 장소 - 피해 인지 시점 - 피해 발생 시점 - 가해자 특정 가능 여부 - 증거(피해촬영물) 확보 여부	- 경찰신고 안내 - 수사·법률 지원 안내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안내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TIP

- 설치형 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증거물로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도록 안내
- 지하철 불법촬영 피해를 겪으면 문자로 112 신고 접수 가능하며,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 방향을 문자로 작성하여 전송
- 촬영 직후 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일부 복구 가능
-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만 한 것으로 처벌 가능

*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s) :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3) 유포 협박

예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이전에 삭제했다고 말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고소하려고 해도 가해자가 유포할까 두려워 고소를 미루고 있음.

-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으나**, 협박 등에 대한 증거 확보와 피해 지원 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 성관계 및 성관계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음**
- 피해자는 유포 불안으로 인해 가해자와의 **연락과 관계 단절이 어려움**

CHECK

확인 사항	지원 사항
- 피해 인지 시점 - 유포 여부 파악 - 관련 증거 확보 여부	- 경찰신고 안내 - 수사·법률 지원 안내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안내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TIP

- 피해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하므로 유의 필요함
- 유포 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신고로 피해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점을 설명하며 신고 권유
- 신고와 동시에 가해자의 휴대폰, PC 등의 저장매체를 모두 압수해서 수사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안내함
- 스토킹 등의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신변 보호 요청,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 필요함

4) 유포 및 재유포 불안

예시

- ① 동의하에 애인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해당 영상이 유포되었을까봐 불안함.
- ② 삭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유포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음.
유포가 계속 확산 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함.

- I 피해자가 유포 불안을 느끼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계기**가 있는지 유포 정황을 파악할 것
- I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 **모든 피해자가 유포 불안을 호소**할 수밖에 없음
- I 유포 정황이 없이 **불안만을 호소**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내용에 큰 한계**가 있음

CHECK

확인 사항	지원 사항
- 유포 여부 파악 - 관련 증거 확보 여부 - 내담자 욕구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안내

TIP

- 구체적인 유포 불안의 원인이나 계기가 있는 경우 피해 촬영물 원본이나 유포된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자료 확보가 최우선이 되도록 상담함
- 불안에 구체적 원인이 있고, 촬영물이 없어서 디지털 매체 복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적절한 답변이 필요함
-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상담사의 노력이 중요함
- 정신적 문제로 인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상담사에게 반복적인 통화를 지속하는 경우, 논의를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

5) 사진 합성 및 편집

예시

- ① 같은 반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합성 전문 계정에 의뢰하여 배우의 나체와 합성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함. 사진 뿐 아니라 이름, 나이, 주소, 휴대폰 번호와 함께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여, 낯선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문자가 옴.
- ② SNS에 올렸던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아해가오*'나 '얼싸**' 사진으로 합성되어 성희롱하는 내용과 게시됨.

* **아해가오** :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한 왜곡된 성적 판타지 중의 하나로, 성적 흥분이 극도에 달했을 때 눈을 치켜뜨는 것 등 표정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

** **얼싸** : 얼굴에 정액을 사정하는 것을 일컫는 은어

- ▶ 주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사이버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됨
- ▶ 이름, 주소, 나이, 휴대폰 번호 등 신상 정보와 허위사실이 함께 게시되는 경우가 많음

CHECK

확인 사항

- 피해 인지 시점
- 유포 플랫폼
- 관련 증거(촬영물, URL) 확보 여부
- 가해자 특정 가능 여부

지원 사항

- 경찰신고 안내
- 수사·법률 지원 안내
- 채증 지원
- [비동의 유포시] 삭제 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안내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IP

- 성적 합성 외에도 셀카를 노출 사진과 동시에 게시하여 그 사람의 신체인 듯 표현하거나, 가슴이나 성기 등의 노출은 없지만, 성적인 묘사를 담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로 신상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글이 함께 게시되는 도용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 성적으로 합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낮다고 말할 수 없음
- 주로 10대에게 발생하며 피해자의 부모님이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도 어렵고 유포 플랫폼의 특성상 가해자도 잡기 어려워서 해결이 어려움
- 피해 상황에 따라 법률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나, 내담자가 피해 지원기관의 조력을 통해 될 수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 있음

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예시

- ① 개인 SNS 계정이 해킹되어 탈취됨. 계정 탈취자는 원 계정 주인으로 위장하고 부적절한 표현 및 신상정보를 함께 유포함.
- ② 속옷 전문 모델로서 활동 중에 촬영했던 속옷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성적 모욕과 함께 게시됨.
본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 SNS 메시지를 통한 연락 등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음.
- ③ 동호회 단톡방에 회원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였음.

! 다양한 피해를 포괄하고 있는 유형으로, 정밀한 피해 분석과 지원 탐색 필요

 CHECK

확인 사항	지원 사항
- 촬영물 유/무 여부 파악 - 경찰신고 여부	-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시] 삭제 지원 - 수사·법률 지원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³⁾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3. 제44조의7제1항2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IP

- 피해가 발생한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능한 삭제 지원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 비공개 대화방 등은 지원자의 접근이 불가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유형 지원에 특화된 피해지원 체계 모색 필요
- 피해 상황에 따라, 사건 진행 시 법률적용 및 삭제·모니터링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가 온라인 그루밍

예시

채팅에서 만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나의 신상정보와 함께 사적인 사진, 영상을 주고받게 됨.
이후 갑자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

- ▮ 주로 1:1 채팅창(채팅 어플, SNS 내 다이렉트 메시지 등)이 이용됨
- ▮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스스로 상대의 요구에 응했다는 점에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음
- ▮ 그루밍 과정에서는 해당 상황의 그루밍 여부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움
- ▮ 가해자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촬영물 혹은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쉬움
- ▮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음(채팅방을 나온다거나, 사건 발생 이후 사진,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음, 부모님의 경우, 자녀의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아 지우는 경우가 많음)

※ **그루밍 성폭력** :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그것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

CHECK

확인 사항

- 유포 여부 파악
- 관련 증거(촬영물, URL) 확보 여부
- 내담자 욕구

지원 사항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안내
- 아동, 청소년의 경우 형사절차 안내
- (비동의 유포시) 삭제 지원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TIP

- 원본 사진, 영상이 있는 경우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음
-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불법임에도 수사망을 피하고자 관련 자료 공유하는 채팅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수사 의뢰하여 경찰이 수사하여 관련 증거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
- 심리적 자책감, 불안 해소를 위한 상담사의 노력이 중요함
- 미성년 피해자와 성인은 유사한 피해에도 연령에 따라 법률적용이 다를 수 있음
- 개인 대 개인의 피해가 아닌, 가해자가 악의를 갖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 또는 촬영물 등을 확보한 후 협박하여 추가적인 촬영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보낸 촬영물을 모두 저장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8) 몸캠 피싱

예시

- ① 개인 대 개인의 채팅 중 나체 사진을 계속 요구함.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
채팅을 통해 얻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유포 협박과 더불어 금전을 요구.
- ② 몸캠 채팅 중 가해자가 보내준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사진 등을 해킹당함.
금전을 요구하는 유포 협박을 하고, 응하지 않으면 해킹으로 수집된 번호로 친척들에게 관련 사진을 유포함.

- I 메신저를 통한 유포일 경우, 삭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I 금전 요구 등 협박도 함께 이루어지는 양상이 다수
- I 남성 피해자의 경우 해킹 피해와 함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경향이 보임

 CHECK

확인 사항	지원 사항
- 피해 발생 시점 - 유포 여부 파악 - 유포 플랫폼 - 관련 증거 확보 여부 - 가해자와의 단절 여부	- 경찰신고 안내 - 수사·법률 지원 안내 - [비동의 유포시] 삭제 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안내



해당하는 현행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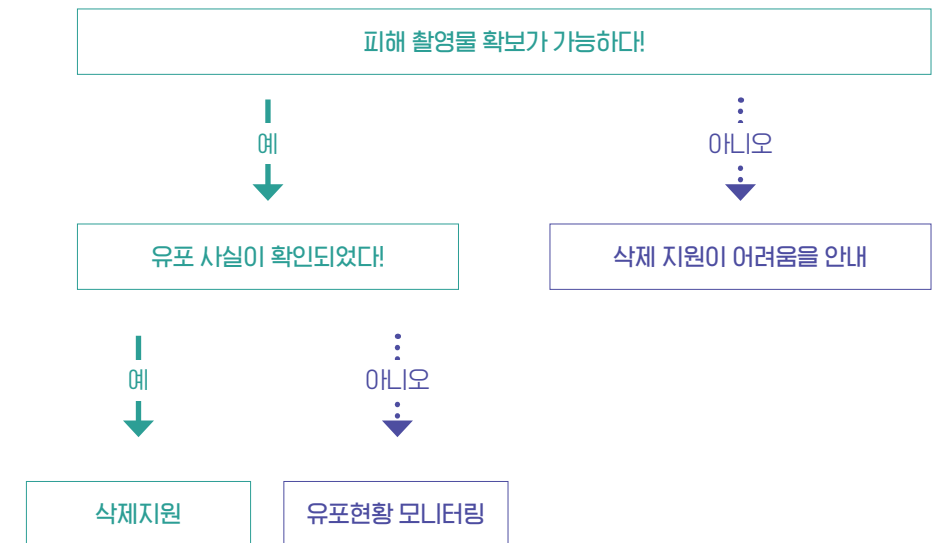
TIP

-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도록 안내 필요
- 가해자가 협박하기 위해 보낸 촬영물(화상채팅 영상 등)을 저장하여 확보하도록 안내함
-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형태의 경우 대화방을 유지하고 있으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화 내용 이메일로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텍스트로 저장할 수 있음
- 신고 과정으로는 ① 화면에 상대방의 글, 아이디, URL, 캡처 날짜 등 가능한 모든 게 보이도록 캡처 ② 게시판 목록 등 맥락을 알 수 있는 정보들도 저장 ③ 고소장 작성(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내용, 고소 일자) ④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증거 확보 후, 가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도록 휴대폰 초기화하도록 안내 필요

(3) 상담 지원 절차 및 체계

1) 삭제 지원 접수 시 안내 사항

[삭제 지원 절차 안내]



- 피해 촬영물 혹은 피해 촬영물 관련 정보(유포 게시물 URL, 검색 가능 키워드 등) 없이는 **삭제 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 안내.

❓ 삭제 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의 차이점은?

- **모니터링**이란, 키워드 및 이미지 검색 등을 활용하여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을 의미. 즉, 삭제 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 지원의 한 형태**임.
-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이 중에서도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모니터링을 반복하여 피해 촬영물의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모니터링 결과, 유포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유포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상담 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함.



[삭제 지원의 한계 고지]

- 온라인 피해의 특성상, 모든 피해 촬영물을 완벽히 삭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내.
- 채증이 필요한지 확인 후, 수사기관의 확인 시에 증거가 남아있어야 하므로 삭제 지원이 일정 기한 보류됨을 안내.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의 특수성과 지원자의 자세

-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상 지원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피해가 끝없이 반복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상담의 중요성을 피해자와 함께 공유함.
- 특별한 사유 없이는 상담사 간이라도 피해 촬영물 및 키워드를 공유하거나 과도하게 언급하지 않아야 함. 특히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사례의 유포 관련 정보는 더욱 유의를 기울여야 함.

3) 대상별 상담 시 유의사항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내담자의 특징

- 각종 디지털 환경을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 모바일 기기를 통해 또래 집단을 포함한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취약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지만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움.

2017년 중학생 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6.3%가 “온라인 관계만으로도 우정이 가능하다”, 21.2%가 “온라인으로 연락만 해도 사귀는 것(연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내 사진을 공유해본 적 있다”는 응답자도 115명(18.9%)에 이르렀고, 11.8%는 “누군가 성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출처 : 한겨레(2019.06.24.) “엄마한테 말하지마” 청소년 노리는 마수 ‘온라인 그루밍’

🕒 내담자 중심의 상담 진행

- 내담자에게 보호자(부모, 주변인)와 상담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상담이 진행될 것임을 알림.
- 주로 부모나 학교에 알리고 싶지 않아 그로 인한 부담감으로 경찰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정보전달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함.

📍 아동·청소년 내담자 보호자 상담 시 주의사항

- 보호자와 함께 내담 시 내담자와의 상담내용이 공유되지 않을 것을 알린 후 내담자와 보호자를 분리하고, 보호자도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자 또한 자책 및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반응을 세심하게 살핌.
-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본인의 관점으로 피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로 대응하도록 권함.

[디지털 매체에 대해 잘 모르는 내담자]

📍 디지털 매체에 대해 잘 모르는 내담자의 특징

- 비교적 디지털 매체 사용에 서툴거나, 활용도가 낮은 중장년 내담자임.
- 가해자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거나,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엔 타인에 의해 피해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큼.
- 디지털 매체나 플랫폼에 관한 관심 또는 활용도가 낮아 피해 상황을 설명할 때 구체적이지 않거나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음.

📍 지원 시 참고사항

- 초기 상담 시에 내담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의 양을 조절하여 안내.
- 디지털 매체나 플랫폼에 관한 관심 또는 활용도에 따라 용어를 낯설게 느끼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쉬운 표현과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
- 디지털 매체나 플랫폼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움을 느껴 경찰신고나 피해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정서 지지를 포함한 안내가 필요함.

(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연계 및 기타 지원

1) 피해지원기관 연계

피해자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지원기관에 연계하여 보호·지원받도록 함

[부처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제도]

여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상담소(특화상담소) • 피해자 보호시설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제도 등
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제도 • 스마일센터 피해지원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주거지원, 범죄피해자구조금 • 법률홍닥터 등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 아동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기관별 피해자 지원 업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기초적인 안내 • 사건접수를 위한 참고자료 증거수집(채증) 지원 • 사례관리를 통한 삭제/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및 결과보고서 발송 • 지원 사실 확인서 발급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데이트폭력 등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24시간 위기상담 및 긴급지원 • 전화, 사이버, 내방, 현장 상담 및 긴급 보호 및 보호시설 입소 연계 • 상담·입소사실확인서 발급
해바라기센터	• 여성가족부, 경찰청, 시·도 의료기관 협약으로, 한 번의 방문으로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성폭력) 피해자 대상 • 위기형, 통합형, 아동형으로 구분되며 24시간 상담 가능(아동형 제외) • 여성 경찰관이 상주해 있으며, 위기·통합형은 응급의료, 수사 지원이 강점이며 아동형의 경우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강점임.
성폭력상담소	•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및 사건지원을 통해 권익증진을 도모함. • 피해상담, 의료·법률 지원 등 여타 서비스 연계. 주거(임대주택) 및 생계비 지원 •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보호시설 입소 연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조기 사회 복귀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피해자 보호·상담·치료·의료·법률·학업 지원 등 심리적 안정 및 가정 복귀 기반 마련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 자립·자활 교육프로그램 제공, 직업훈련비 및 취업 정보제공 • 입소 의뢰 :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국번없이 1366)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교육, 상담 및 진로·진학 지원 • 지원시설 연계 및 일시보호 •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전문 멘토) • 법정대리인 교육·상담 프로그램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삭제 지원 연계 시 절차]



유의사항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담당자와 연계(지원) 가능 여부 협의 및 공문 발송 후 확인 절차 필수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포함한 내역을 발송하므로 공문 외 '연계의뢰서' 는 **암호 처리**하여 발송할 것
- 상담소에서 구비서류 작성을 안내할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의 [상담 신청하기]를 이용하거나 02-735-8994를 통해 디성 센터 상담원과 소통하도록 안내

2) 수사·법률지원 연계

[지원 내용 및 방법]

증거수집(채증) 지원

- 최초 신고를 위한 채증의 경우 경찰의 업무로 진행되나, 피해자가 사건접수를 위해 사건 접수 전에 우선 도움을 요청 시 지원함.
- 증거수집에 동의한 경우, 채증을 지원함.
- 증거수집 (채증) 지원 시 증거물 보존을 위해 삭제 지원은 보류될 수 있음을 안내.

채증 방법 안내

※ 필수 프로그램

- 화면 캡처 프로그램
- 시간 동기화 프로그램(한국표준과학연구원 UTCK 등)
- 동영상 플레이어

[표준시간 맞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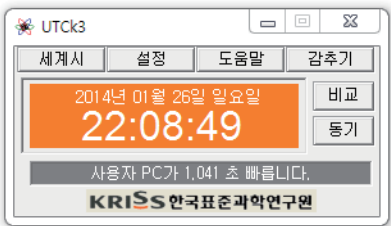
☞ ▶ 표준이하기 ▶ 표준시간 맞추기



UTck3.1 다운로드

UTck 버전3.1 동기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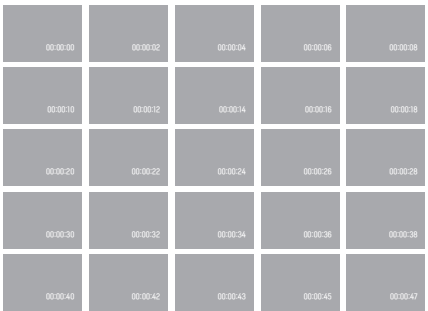
UTck 3.1 Win7 이상 설정요령



① 채증 대상 게시물에서 원본 촬영물(사진·영상) 저장 (영상의 경우 5x5 스냅샷* 출력)

* 스냅샷 : 영상의 내용을 여러 사진으로 분할하여 만든 미리보기를 말함. 대부분의 동영상 플레이어 프로그램에 스냅샷을 제작하는 기능이 있음

파일 이름 피해촬영물
파일 크기 287MB(3,013,411Bytes)
화면 크기 640 x 360
재생 시간 00:00:47



② 채증 대상 게시물에 접속한 뒤, 게시자(아이디, 닉네임), 게시물 제목, 게시일자, URL 등이 보이도록 화면을 구성

③ 시간 동기화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잘 보이는 곳에 위치

④ 화면 캡처

⑤ 원본 촬영물과 캡처 화면을 암호화(비밀번호 설정)하여 제출



▲ 화면 캡처 예시

❶ 삭제 지원을 위한 자료 공적 요청

- 내담자가 삭제 지원을 받기를 원하나 피해 촬영물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 수사단계에서 이미 삭제된 피해 촬영물을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통해 확보한 경우,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증거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함.
- 센터에서는 해당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공문으로 요청함.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관련 시 중요한 포인트

-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해촬영물은 외부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수사 자료이므로 수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증거자료가 넘어간 경우나 재판 진행 중인 경우엔 자료를 받기 어렵거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만약 피해자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우지 말고 보관토록 권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 직접 지원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하도록 권함.

❷ 지원 시 유의사항

[경찰 수사단계 및 법률에 대한 문의]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
- 신고 여부는 오로지 피해자의 결정이므로 강요할 수 없으나, 피해 지원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함.
- 사건 접수, 증거 채택 여부 등 수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절차안내 후, 여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전문 상담 및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함.
- 유포 피해 신고 전 증거 수집(채증)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신청 시 가능함을 안내.
- 관할 경찰서를 피해자 또는 가해자 거주, 사건 발생지역으로 하는 경찰서에서 관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 거주 피해,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청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



수사 및 법률 단계에 대한 답변 시 중요한 포인트

- 수사 및 법률 단계에 대한 자문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안내 외에 상세한 내용은 피해자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중점으로 함.
- 피해자는 상담에서 상담사에게 피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다양한 변수로 수사·법률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4.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 삭제 지원

(1) 삭제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근거

1) '삭제 지원'이란

- 삭제요청(방심위 차단요청 포함), 삭제 완료 확인, 모니터링 등 **유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 내 지원 조치 전반**을 의미함.

2) 삭제 지원의 한계와 의의

- 삭제 지원만으로는 온라인상의 유포를 모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후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삭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 회복은 더디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삭제 지원 역시 **회복 과정의 중요한 한 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2) 삭제 지원 대상 플랫폼

- I 현재 센터에서는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특징에 따라 플랫폼을 분류하여 삭제 지원을 진행함. 플랫폼에 따라 유포 양상, 지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피해 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I 센터에서 삭제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에는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SNS), P2P, 웹하드, 검색엔진, 기타 [아카이브, 커뮤니티, 스트리밍, 클라우드 등]가 있음.

1) 성인사이트

- **정의**: 피해 촬영물을 포함한 성적 촬영물과 도박, 성매매 등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용도의 웹사이트를 의미함.
- **특성 및 현황**: 성인사이트의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구성을 바탕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소셜미디어

- **정의**: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및 확장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의미함.
- **특성 및 현황**: 이용자 대다수가 본인의 신상정보(소속, 나이 등)를 드러내고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함. 이 외에도 소셜미디어만의 다양한 기능들을 악용하여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성착취 혹은 유포 협박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

성인사이트	
분류	특성
영상 재생형	• 영상 재생 서비스를 제공하며 촬영물을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다운로드가 쉽기 때문에 재유포가 용이함. • 이용자의 국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 한국어로 된 ‘키워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언어로 번역되며 새로운 키워드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해외 사이트로의 유포가 증가하게 됨. •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사이트의 경우, 삭제 요청 시 비교적 협조가 원활함. • 대형 사이트를 그대로 복사하여 별도의 사이트로 운영하는 ‘백업 사이트’가 많아, 한 번 업로드가 이루어지면 수십 개의 사이트에 자동으로 연동된다는 특징이 있음. 대형 사이트에서 삭제될 경우, 백업사이트에서도 삭제가 되지만 섬네일, 키워드 등 관련 정보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키워드 :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는 단어, 제목 등을 의미함
게시판형	• 사이트 내 모든 안내가 한국어로, 운영자와 이용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추정되며 주로 국내 피해 촬영물이 게시되어 있음. • 대부분 국내 법망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삭제 요청에 대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 촬영물을 직접 게시하기도 하지만, 드라이브나 클라우드 링크, 토렌트 파일을 활용하여 유포하는 등 유포 방식이 다양함. • 대부분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이트 내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거나, 유료로 결제하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함. • 피해촬영물에 성인사이트 홍보 등의 광고 이미지를 합성하여 게시하기도 함. • 불법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 대부분의 사이트 운영이 불안정해 사이트 주소 변경이 잦음.
파일 공유형	•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중국어를 사용함. • 보통 피해촬영물의 일부분을 미리보기 형식으로 공개한 뒤 해당 촬영물을 저장, 구입 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 이 또한 금전적 이득과 연결되어 있어 삭제 요청에 원활히 협조하지 않음. •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촬영물과 더불어 저장,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까지 삭제 지원을 해야 함.

소셜미디어	
기능	설명
태그	• 해시태그* 기능으로 서로의 타임라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함. 이 점을 이용하여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피해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피해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사이트 홍보 등을 벌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함. • 해시태그 기능을 이용해 소위 일탈계** 와 같은 개인이 운영하는 계정에 접근 및 해킹한 후, 계정 운영자를 협박하여 피해촬영물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가해 행위를 벌이는데 사용함.(텔레그램 내 성착취 수법) * 해시태그 : 특정 단어나 혹은 문장에 대한 검색과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하는 기능으로 단어나 문장 앞에 ‘#’을 붙여서 사용 ** 일탈계 : ‘일탈’과 트위터 ‘계정’을 합친 합성어로, 소위 ‘일탈’ 행위로서 주로 성적인 촬영물, 글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을 의미
실시간 방송	• 실시간 방송(라이브 방송)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이 어려움.
공유	• 소셜미디어도 성인사이트처럼 많은 ‘백업사이트’가 존재함. • 영상, 사진, 게시글을 공유하기 매우 용이함. 자체적으로 외부로 공유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역시 쉽게 가져올 수 있음. • ‘백업사이트’나 다른 사이트에서 이 주소를 활용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게시된 촬영물에 대해 이미지 주소(URL)를 생성하기 때문에 게시글이 지워졌더라도 유포가 크게 확산될 수 있음.
신고	• 대부분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해 게시글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규정에 어긋나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 있어 삭제 요청이 비교적 쉬운 플랫폼 중 하나임.

3) 웹하드

- **정의** : 웹하드 등록제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 사업자로 등록된 사이트만을 의미함. 해당 목록은 매월 갱신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고 있음.
- **특성 및 현황** : 국내법 적용으로 삭제가 원활하여 웹하드 상의 불법 촬영물 유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임. 다만,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 BJ 촬영물 등이 주로 게시되고 있음.

4) 검색엔진

- **정의** :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등과 같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의미함. 피해자 혹은 피해 촬영물을 특정하는 키워드, 신상정보, 이미지 등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 지원 대상 플랫폼에 속함.
- **특성 및 현황** : 피해 촬영물을 유포한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색 결과에는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이 중요함.

5) 기타

플랫폼	구분	내용
커뮤니티	정의	• 공통 주제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주로 국내 서버 사이트에서 국내 이용자 간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특성 및 현황	• 피해촬영물을 직접적으로 게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피해자 혹은 피해촬영물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재유포 및 소비 확산에 영향을 미침.
아카이브	정의	•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운영되는 플랫폼
	특성 및 현황	• 아카이브는 일종의 복사본으로 원본과 연동되지 않아 원본이 삭제되더라도 박제되어 남아있음. 때문에 별도의 삭제 요청이 필요함.
스트리밍	정의	•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팅 플랫폼. 단, 피해촬영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개방형 사이트를 의미함.
	특성 및 현황	• 합법적 운영되기 때문에 삭제 요청에 비교적 협조가 원활함.
클라우드	정의	• 컴퓨터 내부 장치가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특성 및 현황	• 대부분 미리보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야 촬영물 확인이 가능한 형태임.

(3) 삭제 지원 절차 및 체계

1) 삭제 지원 기준

- ※ 삭제 지원 기준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요청 대상** : 피해 촬영물(사진, 영상, 섬네일 이미지 등)
 - **삭제요청 현황 관리** : 현재 센터에서는 1개의 URL을 1번의 요청건으로 집계하고 있음. 같은 URL에 대해 2번 이상 요청하더라도 통계상 1건으로 집계함.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URL에 대해 삭제 방법을 달리하여 요청하는 경우, 별건으로 집계해서 관리하고 있음.

2) 삭제 지원 절차



가) 초기탐색 삭제요청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요청 대상 URL 수집 과정

- 검색엔진 내에 키워드 등을 검색하고 이를 통해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함.
- 만약 유포 게시물을 발견하였다면 해당 게시물의 정보(게시글 제목, 게시일, URL 등)를 확보해야 함.

[검색엔진 기반 검색 방법]

- 현재 센터에서는 검색엔진을 통해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ex. 구글(Google), 빙(Bing), 덕덕고(duckduckgo) 등)
-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란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는 단어, 제목 등을 의미함. 키워드가 확보된 경우라면 검색 과정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검색엔진에 '성인 인증'을 하고 이용해야 좀 더 정확하고 많은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음.

전체

이미지

동영상

지도

뉴스

더보기

도구

검색결과 약 8,890,000개 (0.45초)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는 제외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사용자는 성인인증을 통해 모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성인인증

임시 성인인증

🔍 구글(Google)

- **구글 검색의 의의** : 구글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검색엔진이며 내담자 또한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은 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은 초기 탐색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임.
- **키워드 검색** : 구글 내 키워드 검색 시, 아래의 명령어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함.

명령어	기능
intitle:검색어	제목 우선 검색결과
allintitle:검색어1 검색어2	여러 개의 키워드가 포함된 제목 우선 검색결과
intext:검색어	본문 포함 검색결과
allintext:검색어1 검색어2	여러 개의 키워드가 포함된 본문 검색결과
site:사이트주소(www 제외) 검색어	특정 도메인 내 검색결과
inurl:검색어	url 및 웹 문서 검색결과
키워드 filetype:확장자 검색어	특정 확장자 키워드 검색결과
link:검색어	링크로 연결된 웹 문서 검색결과
info:도메인	특정 도메인 세부 정보
related:도메인	관련 사이트 검색결과
define:검색어	사전적 검색결과
"검색어"	한 단어 간주 검색결과
검색어1+검색어2	검색어2 필수 포함 검색결과
검색어1and검색어2 검색어1&검색어2	검색어1과 검색어2가 함께 들어간 결과
검색어1 ?검색어2	검색어2를 제외한 검색결과
검색어1-검색어2	검색어2를 제외한 검색어1 검색결과
검색어*, ~검색어	유사 검색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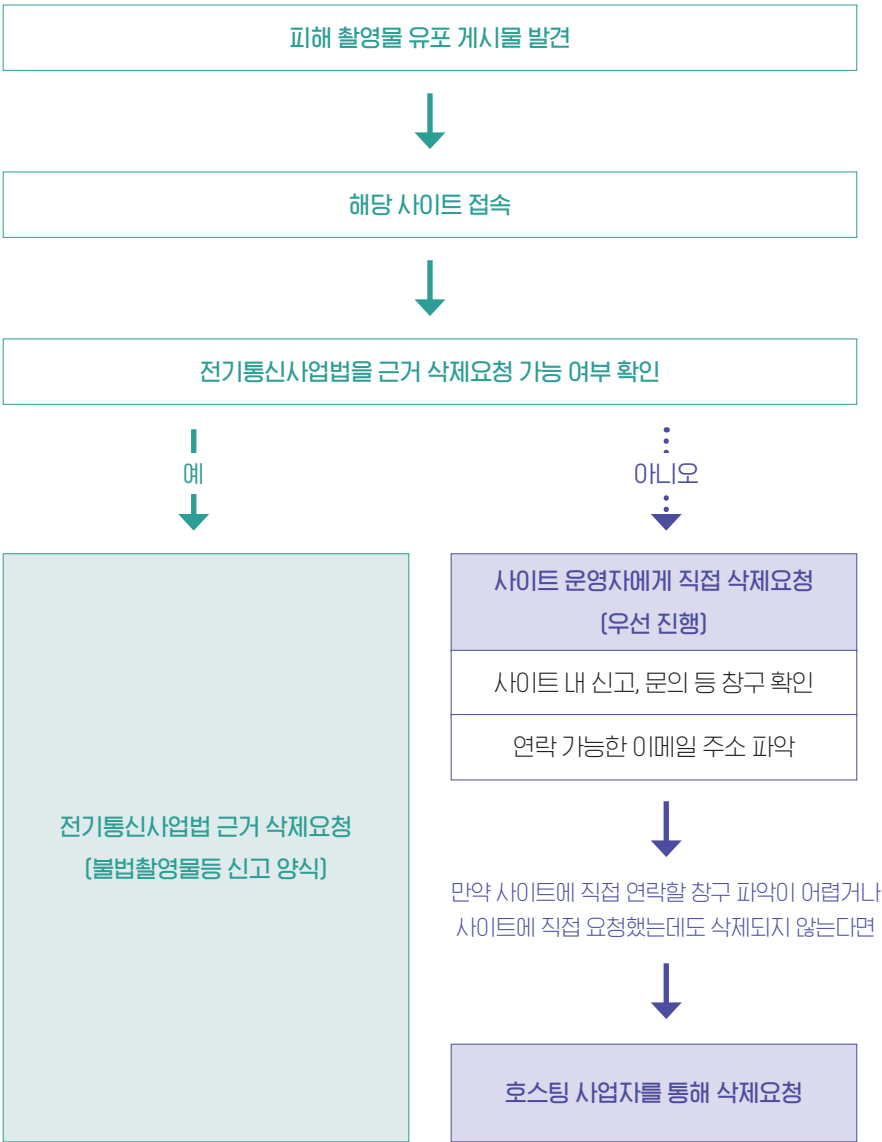
🔍 그 외 검색엔진

검색엔진	특징
빙 ⁴⁾ [Bing]	빙은 많은 피해 촬영물이 유통되는 검색엔진은 아니나,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고, 삭제된 게시물의 검색 결과를 삭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플랫폼
덕덕고 [duckduckgo]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여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가해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으로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4) Bing 문제 신고:<https://www.microsoft.com/ko-kr/concern/bing>

나) 삭제요청

【삭제요청 방법】



-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 가장 먼저 해당 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 근거로 삭제요청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함.
만약 가능한 사이트라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삭제요청을 해야 함.

- 해당 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 근거로 요청할 수 없는 곳이라면

: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플랫폼의 유형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1:1 문의, 신고 등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거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있음. 사이트 내부에서 연락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메인⁵⁾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 삭제 요청 대상 사이트의 관리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이트와 직접 연락 가능한 창구를 찾지 못하였거나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라면

: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사업자⁶⁾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호스팅 사업자 정보 또한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파악했다면

: 창구를 통해 삭제요청 스크립트와 삭제요청 대상 게시물의 정보(제목, URL)를 전달해야 함.

5) 여기서의 도메인(Domain)은 IP주소와 같이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를 알기 쉽게 영문으로 기재한 것을 의미하며, 정확히는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이라고 표현해야 함.

6) 여기서 호스팅(Hosting) 사업자란, 홈페이지나 웹 서버 기능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삭제 요청 스크립트 예시

제목 게시물 삭제요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관명)입니다.

귀하의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 중 피해 촬영물을 포함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영상, 사진, 제목, 내용, 키워드 및 섬네일 등 불법정보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 추가적인 유통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URL :

※ 삭제요청 시 삭제를 요청하는 기관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 대표 이메일, 대표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개인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은 지양) 또한 삭제요청을 위한 회원 가입 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비하여 기관 전용 휴대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삭제요청

-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에 의거하여 삭제조치의무사업자 및 삭제요청 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 **삭제요청 플랫폼(조치의무사업자)**

: 피해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는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삭제요청 범위** :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개정 2020. 6. 9.>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삭제요청 기관**: 개인인 경우 누구나 삭제요청 가능하나, 기관 요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여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본조신설 2020. 12. 8.>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⑤ 생략

소재지	기관·단체명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남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경북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대구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대전	(사)대전여민회
부산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서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제주	(사)제주YWCA
충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21년 기준]

- **삭제요청 방법** :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이트 접수 및 신고함.

※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일부 사이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를 탑재한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삭제 요청 대상 사이트 내 자체 창구를 여부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illegible]

네이버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창구

[illegible]

다음카카오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창구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기록(2023.05.07부터)을 신고할지 여부 선택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책의 효과, 정보통신장관 등 통화에 참여하여 유출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량통제요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청 등록을 통하여 안전성 강화, 해당 정보보호 삭제 접수처리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단계를 발견하신 사항에 따라 유통방지책 요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요청 사유가 불법촬영 등 카카오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 삭제요청서

* 표시 항목에 필수사항이나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도, N/A로 서명한 항목을 위해서 가능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안내

신고 개시일 추가 *	1	URL 입력	신고 사유 선택하기 ▼	삭제
	+ 신고 개시일 추가			

(신고 개시일은 1회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독URL로 신고 완료, 처리가 지연 되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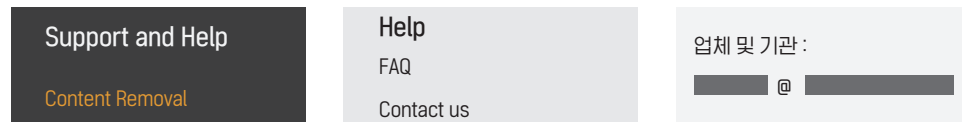
신고인

성명 (가명 대체*)

성명 입력

📍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요청

- 대부분의 사이트가 해당 사이트 내에 신고·문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거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게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들은 보통 **사이트의 하단**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
- 외국 사이트의 경우, 문의 창구를 ‘Abuse’, ‘Contact’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 만약, 언어로 인해 창구를 찾기 어렵다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사이트의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많은 사이트에서 DMCA⁷⁾라는 창구도 함께 게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해당 창구를 이용해 삭제 요청하는 경우, 사이트 측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증거를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답변이 올 수 있음. 때문에 가급적이면 DMCA 외의 다른 창구를 활용해 삭제요청을 진행하고, 요청 가능 창구가 DMCA 창구뿐이라면, 삭제요청 대상 촬영물이 피해 촬영물이고, 피해지원의 맥락에서 요청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함.
- 만약 사이트 내부에서 문의 창구 혹은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 방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여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 이메일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음.

7)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으로 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을 의미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관리자 이메일** 등 새로운 삭제 요청 창구 탐색에 활용

사이트명	URL	특징
Whois	https://www.whois.com	이메일 주소 복사 불가능
da whois	https://dawhois.com	삭제 창구 이메일 주소 복사 가능
DomainBigData	https://domainbigdata.com	

- 삭제요청 창구를 찾고자 하는 사이트의 URL 검색
- 삭제요청 창구 확인하기(['Registrant Contact' 혹은 'Registrant Email'])

📍 호스팅 사업자를 통해 삭제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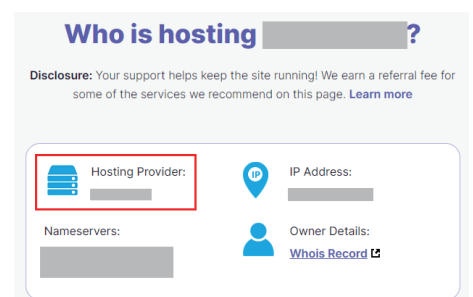
- 사이트와 직접 연락 가능한 창구를 찾지 못하였거나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음. 호스팅 사업자 정보 또한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사업자의 정보** 확인

사이트명	URL	특징
whoishostingthis	https://www.whoishostingthis.com	hosting 업체 정보 파악

- 'Hosting Provider'에 사업자명이 기재되어 있음. 해당 사업자명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의 및 이메일 등의 연락 창구를 찾아 삭제 요청 진행



다) 재요청 및 삭제완료

[미완료 건에 대한 재요청]

❖ 다른 삭제요청 방법 활용

- 이전에 요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재요청을 해야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요청

- 지속적인 삭제요청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 조치를 위해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방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접속

> [전자민원] > [디지털성범죄 신고] 클릭 후 심의신청 관련 정보 기입

디지털 성범죄 신고

HOME > 전자민원 > 디지털 성범죄 신고 > 디지털 성범죄 신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방지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합니다. 유효성은 인증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휴대전화로 인증하기

소지하고 계신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받는 방법입니다.

휴대전화 인증하기

아이핀(i-PIN)으로 인증하기

주민등록번호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이핀 인증하기

생년월일 인증 (기 신청자)

신청 시 기재하셨던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한영)

생년월일

로그인

*아이핀(-), 공백없이 입력해주세요. (숫자)
예) 19900320

심의 대상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성(性)관련 불법촬영정보, 합성 등의 허위영상정보, 피해자 관련 신상정보
- 성적 불법촬영정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정보

민원인정보(기본)	민원인정보(상세)	민원 정보
단체민원여부	☒ 개인 ☐ 단체	
신청인		성별 ☐ 남자 ☐ 여자
연락처1	02 - -	연락처2 010 - -
이메일	@	직접입력
결과통보방식	☐ 이메일 ☐ SMS통보 ☐ 서신	

민원인정보(기본)	민원인정보(상세)	민원 정보
생년월일	하이픈(-), 공백없이 입력 예)19900320	
비밀번호	8~32자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 힌트	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힌트정답
우편번호		우편번호검색
주소		

민원인정보(기본)	민원인정보(상세)	민원 정보
-----------	-----------	-------

신청정보

인터넷주소 (URL)
URL 입력 시 512 Byte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512 Byte 초과 시, 신청내용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URL이 민원인 본인 또는 다른 민원인이 신고하여 접수된 URL과 동일한 경우 등에는 '각하'로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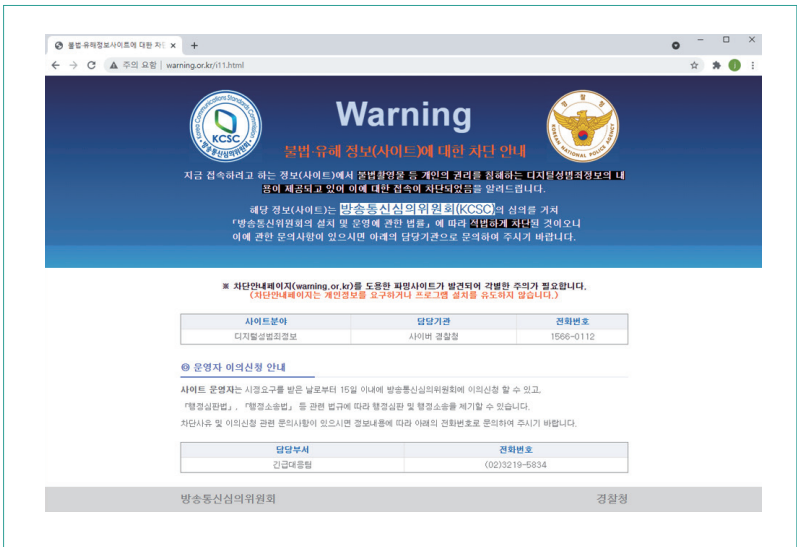
※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신고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URL 신고시 아래의 '계속신고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

제목	
첨부파일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내용	내용 입력 시 4000자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4000자 초과 시, 한글 등 타 문자로 작성하여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URL 혹은 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짐.
- ※ ‘차단’은 해당 게시물 삭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IP를 통해서만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VPN을 활용해 IP를 우회하여 접속하는 경우, 접근이 가능합니다.



[삭제 완료 기준]

- ※ 삭제 완료 기준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 완료를 판단할 때는 ‘피해 촬영물’이 온전히 삭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단순히 게시글이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특정 IP로 우회해야만 접속할 수 있거나,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삭제 완료로 간주하지 않음.
- 미삭제 게시글에 대한 최후 조치로서 삭제 방법이 방심위 심의 요청인 건에 대해서는 ‘차단’ 여부로 삭제 완료를 판단하고 있음.

3) 플랫폼별 삭제요청 시 유의사항

[성인사이트]

- 성인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래서 국내법을 적용해서 요청하기 어려움.
- 한국 IP로는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VPN을 활용해서 접속해야 함.
- 성인사이트 중에서도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플랫폼 설명 참고)에서 영상 주소를 가져와 게시한 경우가 많음. 그럴 땐 해당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삭제요청을 해야 피해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됨.
- 성인사이트의 게시물을 확인 및 삭제 요청하기 위해 회원 가입이 필요하거나 비트코인 등을 결제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곳도 있음.

[P2P]

- P2P 사이트 또한 대부분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한국 IP로는 접속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럴 때는 VPN을 활용하여 접속해야 함.
- P2P는 키워드, 해시값을 중심으로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 촬영물의 키워드, 해시값 정보가 중요함.

[웹하드]

- 웹하드는 국내법 적용을 받는 곳으로 대부분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요청도 용이함.

[소셜미디어(SNS)]

- 소셜미디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대부분 국내에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많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요청이 가능함.[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있으니 유의해서 지원해야 함.[대표적 소셜미디어: 텀블러 등]
- 소셜미디어의 경우, 자체 신고 창구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창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 검색엔진에 ‘소셜미디어 명 + 신고’등을 검색하면 관련 창구에 대한 안내가 나와 이를 활용해서 삭제 지원할 수 있음.
- 또 대부분의 소셜미디어가 게시물 상단(혹은 하단)에 ... 버튼을 게시하고 있음. 이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음. 해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입력, 선택하여 진행해야 함.

[스트리밍]

- 보통의 스트리밍 플랫폼은 영상 상단(혹은 하단)에 본인들의 플랫폼명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된 영상 속에서 다른 사이트명이 보이는 경우,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음.
- 스트리밍 플랫폼을 삭제 지원하는 경우, 영상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영상 내에 버튼이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영상 주소를 얻을 수 있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소를 확보할 수 있음.

- ① 동영상에 게시된 페이지 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페이지 소스 보기] 혹은 [Ctrl]+U 클릭 하여 해당 페이지 소스 화면 확인

② [Ctrl]+F 클릭 후, mp4 혹은 해당 스트리밍 주소로 추정되는 도메인 이름(ex. sendvid, fembed, feurl, dood 등) 검색하여 영상 주소 확보

[검색엔진]

- 검색엔진 삭제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어도 계속해서 검색 결과에 유포 정보(섬네일, 키워드 등)가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검색엔진의 경우, 사이트별로 다양한 검색 결과 삭제요청 방법이 있음.

🔍 Bing(Bing)

- 콘텐츠 삭제⁸⁾ 접속
- Bing 검색 결과에서 복사한 URL을 [콘텐츠 URL]에 입력
- 삭제 유형 '페이지 삭제' 선택
- 제출

🔍 구글(Google)

- 구글 오래된 콘텐츠 삭제

-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URL 중 이미 수정 또는 제거된 페이지, 이미지 URL에 대한 삭제요청
- 오래된 콘텐츠 삭제⁹⁾ 접속 후 구글 계정 로그인 진행
- 구글 검색 결과에서 지원대상 URL 복사 후 **New request** (새로운 요청) 클릭
- 요청하는 URL의 유형에 따라 [Page], [Image] 탭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삭제 대상 URL 입력
- URL 입력 이후 나타나는 안내 문구에 따라 추가 조치

안내 문구	필요 조치
Your request has been submitted.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삭제 여부 확인 필요
You've already submitted this URL. [이미 삭제 요청한 URL입니다.]	기요청건 및 삭제 여부 확인 필요
The URL/Image URL still exist. [요청한 URL이 아직 존재합니다.]	오래된 콘텐츠 삭제로 삭제요청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해당 URL에 대한 별도의 삭제요청 필요 ※ 이 알림이 뜬 URL을 구글 오래된 콘텐츠 삭제 창으로 삭제요청 시 요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큼

- 삭제 완료 확인 시 삭제 요청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확인이 가능
- 오래된 콘텐츠 삭제 페이지에서 Ctrl+F를 눌러 삭제 요청한 URL을 입력한 후, 조치 현황에 따른 삭제 여부 확인(승인됨[Approved], 만료됨[Expired]은 삭제 완료, 거부됨[Denied]은 삭제 미완료 처리)
※ 이미지에 오른쪽 버튼 클릭 시 이미지 주소 복사 가능¹⁰⁾

9)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removals>

10) 이미지 URL 찾는 방법 : <https://support.google.com/webmasters/answer/63758#multiple>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

-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 또한 스트리밍 플랫폼과 유사함.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 URL의 도메인 이름과 이미지 URL 상의 도메인 이름이 상이하다면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통해 이미지를 게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이미지 주소는 해당하는 이미지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할 수 있음. 그렇게 주소를 확보한 후 해당 URL로 접속하면 사이트 내 창구를 확보할 수도 있고, 사이트 화면이 뜨지 않는다면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이트를 통해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음.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발행인	박봉정숙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연락처	T. 02-735-1050 / F.02-6464-8492
홈페이지	www.stop.or.kr
등록번호	여성인권-기타-2021-06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www.stop.or.kr | TEL 02-735-1050 | FAX 02-6363-8493